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5년 9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2004.12.31. 법률 제7306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운영,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운영,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 비율의 설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적용 배제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의무를 배제

- 다른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정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유효한 경쟁이 되지 않고 유찰되어 재입찰하는 경우 및 기타 구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자로서 생산 또는 용역 설비를 갖추고,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및 생산능력 등 규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 참여가능한 입찰금액의 범위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되, 관계부처, 학계, 연구계, 조합 및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구매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 중소기업청장은 납품실적, 생산·기술능력, 신용 평가 결과, 입찰가격, 신인도 평가 등을 반영한 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 공공기관의 장은 이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별도의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중대 등

-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일반공사 20억원, 전기공사등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 소요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구매토록 함.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 투자사업(BTL 사업 등)에 의한 공사도 포함하도록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 추가

- 국가기관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20개기관을 추가
-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2개 기관을 추가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보고

- 공공기관은 매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매계획에는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전체의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으로 하고,
 - 각 공공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매년 4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함.
-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시에는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 실적 미달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아. 인증 유효기간

○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인증의 취소 등

○ 인증 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 시험연구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 업체는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공장이전, 업체의 양도·양수·합병, 인증서 분실·훼손 등의 경우에는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도록 함.

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구축

○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보망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수집·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입찰 및 낙찰정보 등을 중소기업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허위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 경쟁입찰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 및 중속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1905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골프장, 유통단지 안에 입지하는 물류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등의 변경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1) 그동안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

하도록 함.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완화
(별표 1 제2호가목)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중 실제로 교통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관련 개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 부지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골프장의 규모가 27홀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골프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위원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중 “위원장”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중앙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시 · 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 · 국장인 위원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중 “위원장”을 “시 · 도지사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시 ·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을 “시 · 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 ·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자)중 “5만m²”를 “10만m² 이상”으로 하고, 동목(10)(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m²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m² 이상 300만m² 미만

별표 1 제6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제2호가목(1)(사)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아니한다.

제1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

법’”으로 한다.

제28조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되, 호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90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제안서 검토 의뢰시 또는 계획 수립시
---	----------------------

별표 2 제2호가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	사업의 허가전
---	---------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가목(1) 및 (2), 나목(1) 및 다목(1)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비고 제1호가목(3)·나목(2)·다목(2) 및 라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비고 제1호가목(4)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목(5)중 「초·중등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목(6)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본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 관리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목(2)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하며, 동목(3)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호나목(1)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목(2)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3)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1)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동목(2)중 「온천법」을 「온천법」으로 하며, 동호라목(1)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며, 동호마목(1)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바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시기란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목(2)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의 협의시기란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구분란 및 동목(1) 내지 (3)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나목의 구분란 및 동목(1)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의 구분란 및 동목(1) 내지 (4)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목의 구분란 및 동목(5) 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각각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1)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의 구분란 및 동목(1) · (2) 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의 구분란 및 동목(1) 내지(3) 중 “습지보전법”을 각각 “「습지보전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의 구분란 및 동목(1) 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하고, 동목(1) 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며, 동목의 구분란 및 동목(2) 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하고, 동목의 구분란 및 동목(3) 중 “소하천정비법”을 각각 “「소하천정비법」”으로 하며, 동목의 구분란 및 동목(4) 중 “지하수법”을 각각 “「지하수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의 구분란 및 동목(1)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목(1)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2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비고 제3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비고 제4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표 3 가목(1)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 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3)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4)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비법”으로 하며, 동표 나목(1)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동표 다목(1) 중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 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라목(1) 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동목(2) 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고속철도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동목(3) 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동목(4)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동목(5)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표 마목(1)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목(2) 중 “어항법”을 “「어항법」”으로 하며, 동표 바목(1)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목(2) 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동목(3)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표 사목(1)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목(2)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목(3)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18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

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공포·시행)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동지역에 신설되는 개별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지역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0mg/l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40mg/l 이하, 부유물질량 30mg/l 이하)을 적용하려는 것임.

200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교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에 의한 공장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은 특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제13조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15조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2호다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24조제4항제4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4조의2 제2항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제55조제1호가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으로 하고, 제57조제1호나목 본문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어선업법”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바목 단서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하고, 제59조제7항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며, 제69조제1항제2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하고, 제76조의2제4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제83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74.의 배출시설
란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호 82.가목의
배출시설란 및 나목의 배출시설란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수산업법”
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대상란중 “체육
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6호
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특례지역란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비고란 제1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
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비고란
제3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표 제
2호의 비고란 제1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
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비고란 제7
호 표 외의 부분 단서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비고란 제8호 표 외의 부분 단
서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영

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 본문중 “사료관리법”을 “사료
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1) 본문중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농약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2) 단
서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의 1. 및 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의 1. 및
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목의 2.(2)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어선업
법”으로 하고, 동목의 2.(7)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
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마목(18)의 위반사항란중 “해양오염
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 환경산업정보총람 Vol5’ 발간 및 판매 안내

- 발행처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발행일 : 8월 1일
- 판매가 : 50,000원
- 구입문의 : 연합회 사무국 (02)852-2291